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8495

제안연월일: 2025. 2.

제 안 자 : 국방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다음 2건의 법률안을 국방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의 안 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전체회의 상정일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556	홍기원의원	2024. 12. 17.	2025. 2. 11.
	2206605	김성원의원	2024. 12. 17.	2025. 2. 11.

- 나.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률안 심사소위원회(2025.2.19.)에서 심사한 결과, 이들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다.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방위원회(2025.2.20.)에서 이러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일정지역 거주를 채용요건으로 하는 경력채용 군무원도 출산·양육 등 모성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보 가능토록 하고.

군무원 임용권자에게 휴직으로 인하여 군무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대체인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군무원이 안정적으로 일·가정 생활을 병행하며 복무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일정지역 거주를 채용요건으로 하는 경력채용 군무원도 출산· 양육 등 모성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보 허용 (안 제7조제5항).
- 나. 군무원 임용권자에게 휴직으로 인하여 군무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대체인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여(안 제14조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출산, 육아, 모성보호를 위해 전보가 필요한 경우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보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경우 대체인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신규 채용) ① ~ ④ (생	제7조(신규 채용) ① ~ ④ (현행		
략)	과 같음)		
<u> <신 설></u>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출산,		
	육아, 모성보호를 위해 전보가		
	필요한 경우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보를 제한		
	<u>하지 아니한다.</u>		
<u>⑤</u> (생 략)	<u>⑥</u> (현행 제5항과 같음)		
제14조(휴직자·장기파견자 등의	제14조(휴직자・장기파견자 등의		
결원 보충) ① ~ ③ (생 략)	결원 보충) ① ~ ③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④ 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대체인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